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경매2계)
건명	주식회사 양지옥션 외 18명 소유물건(2024타경462)
감정서번호	가람 1624-04-2201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41)668-6888 FAX:041)668-6891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지사장 권기영

(인)

감정평가액	일십이억팔천일백삼십이만원정(₩1,281,32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양지옥션 외 18명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4.23	2024.04.22 ~ 2024.04.23	2024.04.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토지	128,132	토지	128,132	10,000	1,281,320,000
		이	하	여	백	
합계						₩1,281,32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소재 통칭 “불향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출을 위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가. 토지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이용상황	2023년 01월01일 개별공시지가(원/㎡)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9-43	임야	농림지역	128,132	자연림	3,590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4월 23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4년 04월 22~23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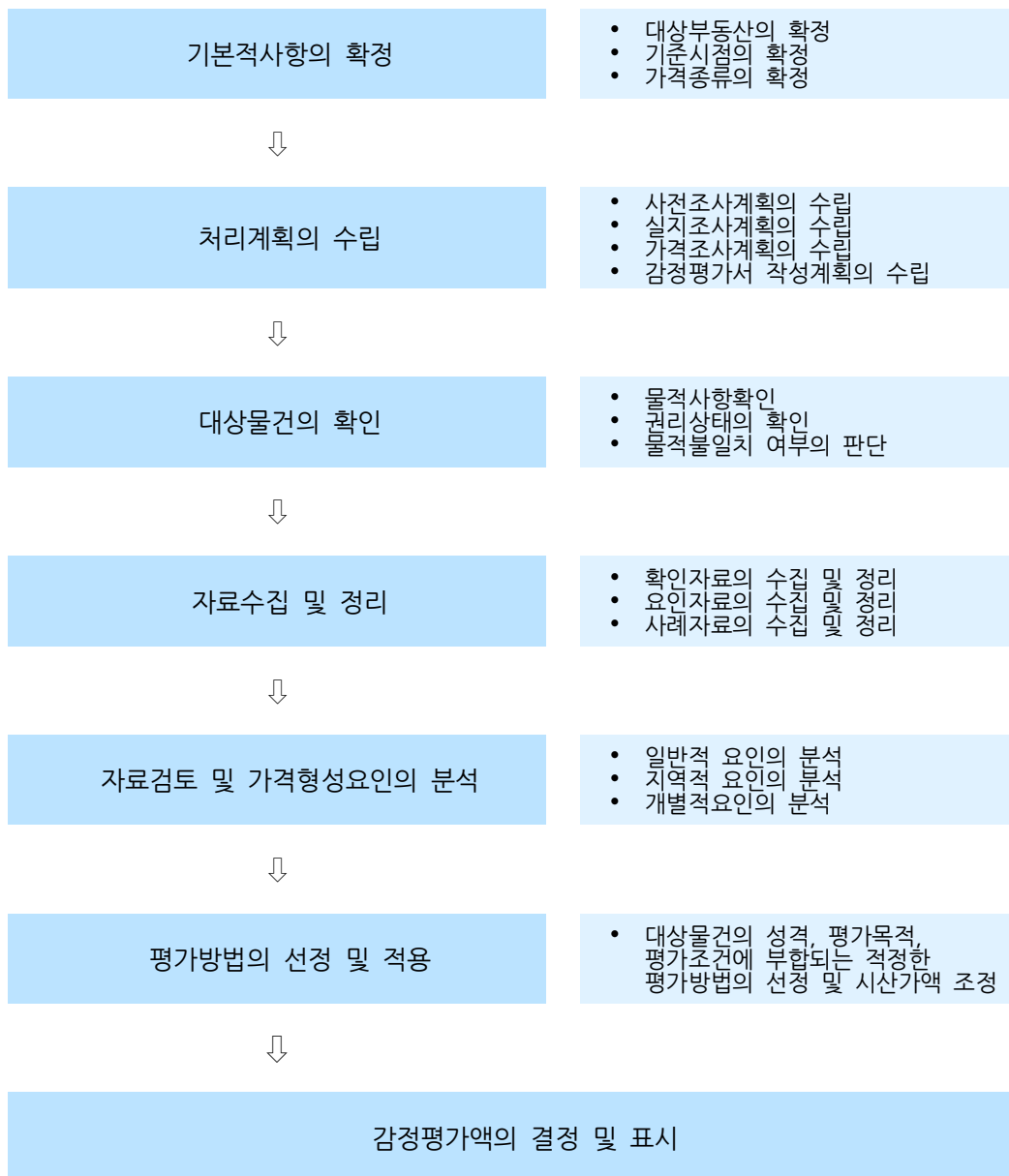
다. 본 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 건의 토지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본 건 토지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며, 분묘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격을 병기하였음.
- 3) 본 건 ‘지적및건물개황도’ 상 분묘의 위치는 목측 및 탐문조사, 위성사진을 근거로 작성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4) 본 건 토지 일부가 지목과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는 바,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지목에 따른 가격을 병기하였음.
- 5) 본 건 토지의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면적(㎡)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ㄱ	소근리 산14-1	임	농림지역, 자연림	세로 (불)	53,593	11,000	2023-12-26	법원경매
#ㄴ	소근리 산5-21	임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11,570	88,000	2022-05-17	법원경매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면적(㎡)	거래가격 (원)	토지단가 (원/㎡)	거래 시점	건물사용 승인일
					건물면적(㎡)				
#1	소근리 264-22	임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3,026	38,000,000	12,557	2020- 08-31	-
					-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4.01.01)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	A	소근리 산119-31	69,683	임	자연림	농림지역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4,200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시 군 구 (산 정 기 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1	A	태안군 (2024.01.01~2024.04.23)	농림지역	0.142% (1.00142)	2024.01.01 ~ 2024.02.29 : 0.090 2024.02.01 ~ 2024.02.29 : 0.028 $(1 + 0.00090) * (1 + 0.00028 * 54/29)$ ≒ 1.00142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라. 개별요인의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 정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정 등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0.95	0.96	1.00	1.00	0.912
결정의견	기호1은 비교표준지A 대비 임도의 배치 등 접근조건, 지세, 면적 등 자연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98두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A	# ㄱ

■ 선정 사유

인근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하고,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감정평가된 사례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면적(㎡)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 ㄱ	소근리 산14-1	임	농림지역, 자연림	세로 (불)	53,593	11,000	2023-12-26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산정

■ 표준지A / 비교사례# ㄱ

비교사례 비교표준지	구분	사례가격(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②)
		공시지가(원/㎡)					
# ㄱ	① 사례기준 표준지가액	11,000	1.00163	1.000	1.000	11,017	2.619
A	② 기준시점 표준지가액	4,200	1.00142	-	-	4,205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 산출근거	사정보정	-					
	시점수정	태안군 (2023.12.26~2024.04.23) 농림지역 지가변동을 적용함.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표준지A는 비교사례# ㄱ 대비 제반조건에서 유사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0	1.000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A	2.61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비 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격 (원/㎡)
1	A	4,200	1.00142	1.000	0.912	2.61	10,011	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사례의 선정

■ 비교사례 선정 및 그 사유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 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1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고,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면적(㎡)	거래가격 (원)	토지단가 (원/㎡)	거래 시점	건물사용 승인일
					건물면적(㎡)				
#1	소근리 264-22	임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3,026	38,000,000	12,557	2020- 08-31	-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기 호	비교사례	시 군 구 (산 정 기 간)	용도지역	시점수정치	비고
1	#1	태안군 (2020.08.31~2024.04.23)	농림지역	3.898% (1.03898)	2020.08.01 ~ 2020.08.31 : 0.197 2020.09.01 ~ 2020.09.30 : 0.107 2020.10.01 ~ 2020.10.31 : 0.118 2020.11.01 ~ 2020.11.30 : 0.081 2020.12.01 ~ 2020.12.31 : 0.108 2021.01.01 ~ 2021.12.31 : 1.439 2022.01.01 ~ 2022.12.31 : 1.651 2023.01.01 ~ 2023.12.31 : 0.196 2024.01.01 ~ 2024.02.29 : 0.090 2024.02.01 ~ 2024.02.29 : 0.028 $(1 + 0.00197 * 1/31) * (1 + 0.00107) * (1 + 0.00118) * (1 + 0.00081) * (1 + 0.00108) * (1 + 0.01439) * (1 + 0.01651) * (1 + 0.00196) * (1 + 0.00090) * (1 + 0.00028 * 54/29)$ ≈ 1.03898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본 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 정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 건 기 호	비 교 사 례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	1.00	0.85	1.00	1.00	0.850
결정의견		기호1은 비교사례#1 대비 지세, 면적 등 자연조건에서 열세함.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1	12,557	1.000	1.03898	1.000	0.850	11,089	1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가.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면적 (㎡)	결정된 토지가액 (원)
1	10,000	11,000	10,000	128,132	1,281,320,000
합계				128,132	1,281,32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토 지	128,132	10,000	1,281,320,000
합 계			1,281,320,000

*기호1(임야일 경우): 9,700원/㎡임.

*기호1(분묘 감안가격): 9,800원/㎡임.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9-43	임야	농림지역	128,132	128,132	10,000	1,281,320,000	일부 답
								1,242,880,400	임야일경우
								1,255,693,600	분묘감안가격
합 계							₩1,281,32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소재 통칭 “불항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해안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답 및 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젓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토지에 분묘 수기(약6기 이상)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

7.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답 및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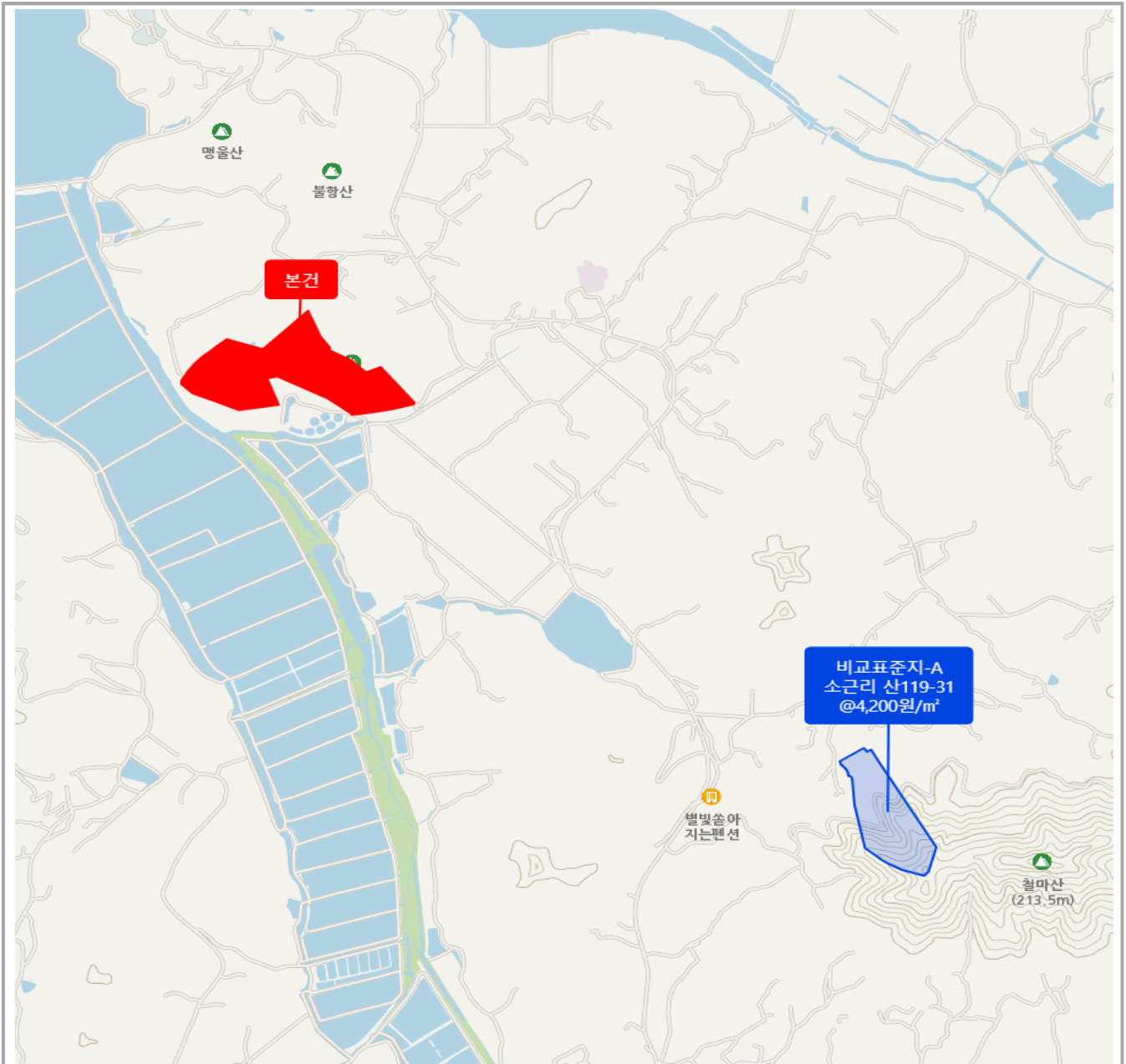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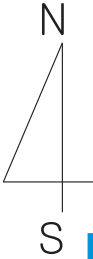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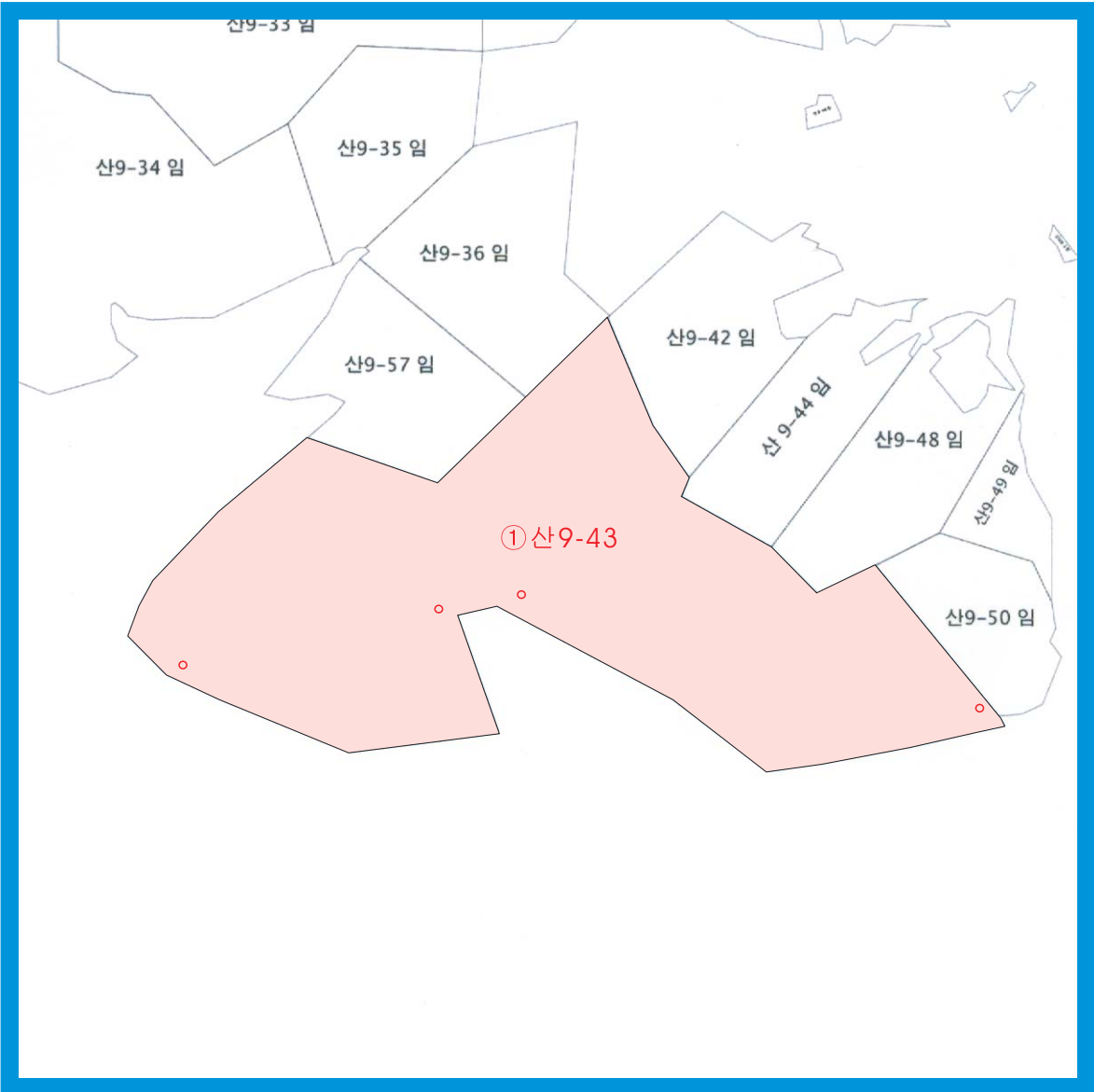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9-43



지적 및 건물개황도



FREE SCALE



표시구분



본건



분묘소재부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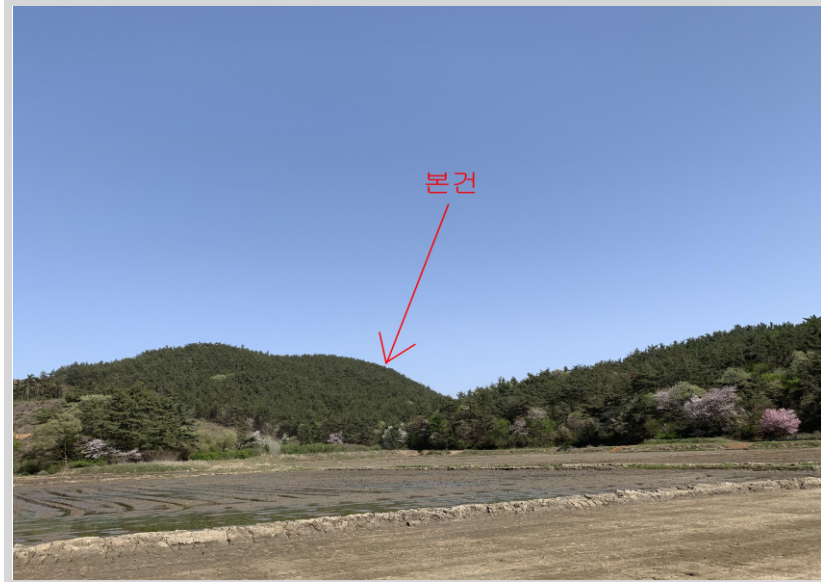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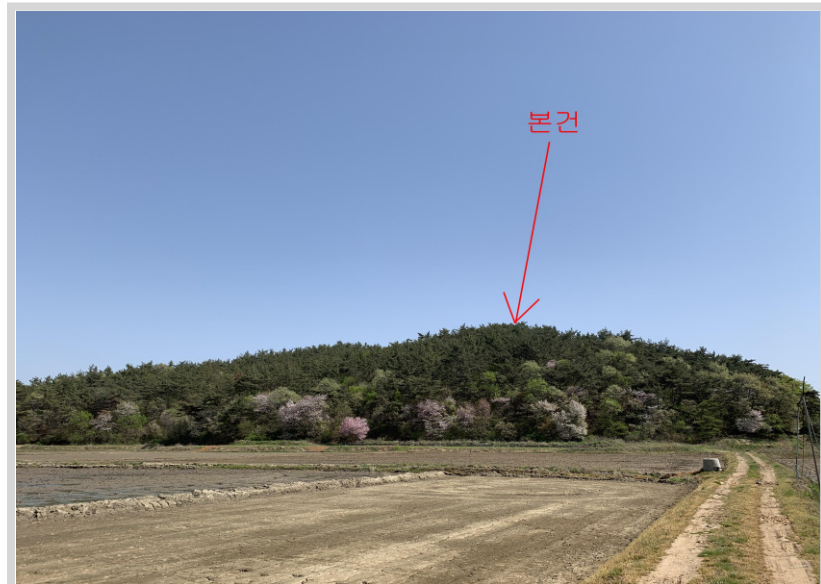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분묘소재부분(일부)]